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근거 및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지원센터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5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8조)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불입)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실태조사, 법률 지원, 상담 및 고용촉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불합리한 고용, 저임금 등의 차별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비정규직 문제가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의 불안요인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